

# 개화기 과부개가 담론분석 - 신문과 신소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f discourses on remarriage of the widow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 Based on newspapers and Shinsoseol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시간강사 전 미경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Lecturer : Jun, MiKyung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개화기이전 과부개가금지의 연원
- III. 개화기 과부개가금지 담론의 실상과 특성
- IV. 개화기 과부개가 담론의 이중성: 더욱 고매해진 정절윤리
- V. 맷음말

## 〈Abstract〉

This paper serves to analyze discourses on remarriage of the widows at the beginning of the modernization era or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1860-1910). The discourses of newspapers and Shinsoseol which are the text of this study have been analyzed with the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The major conclusions that are deriv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tellectual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claimed the unfairness of the prohibition from remarriage of the widows with especially focusing on financial difficulty and life-long loneliness of the young widows. Second, permission of remarriage of the widows was explained not with the point of vies of individual life of widow, but with the point of vies of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ird, the discourse claimed that the widow should hold the power of decision of remarriage. Forth, the discourse emphasized the etiquette of the wedding ceremony

in remarriage of widows. Fifth, the point that the faithfulness was not easy for a usual widow to obey made the faithfulness noble ethical principle on Korea society

◆ key word: 개화기, 가족윤리의식, 과부개가, 정절, 국가의 경쟁력

## I. 들어가는 말

개화기<sup>1)</sup>는 서구에 대한 인식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새롭게 인식된 ‘타자’로서의 서구는 조선인에게 익숙했던 ‘조선의 일상’을 새로운 바탕 위에서 읽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이때 서구의 ‘강대함’이 그 강요의 당위성을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타자로서의 서구와 그 문물을 거리낌없이 조선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새롭게 형성된 서구적 잣대는 조선의 문물을 가혹하리 만치 냉혹하게 재단하고 있었으며, 특히 조혼과 축첩제 그리고 과부개가금지의 가족제도는 야만적인 악습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개화기 과부개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담론을 만들었던 지식인들이 준거로 삼고 있는 ‘미시적(微視的) 구조’에 주목함으로써 이들이 일상에 구현시키려 했던 ‘의도’를 읽어보는데 있다. 즉 개화기 지식인들은 일상을 규율하는 과부개가금지의 어떤 부분을 문제로 인식했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이러한 작업 속에 내재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Ⅱ장에서는 과

부개가금지 담론을 보다 잘 ‘따라 읽기’ 위하여 개화기 이전 과부개가금지가 법제화된 과정과 이를 둘러싼 논의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초점이 되는 Ⅲ장에서는 개화기 과부개가금지 담론의 실상과 그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과부개가금지를 둘러싼 당시의 ‘일상’ 즉 과부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당대 지식인들이 어떠한 준거 위에서 ‘과부개가허용의 담론’을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러한 담론에서는 과거와 다른 어떤 새로운 시각이 도출되고 있는지를 읽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Ⅳ장에서는 개화기 지식인들이 펼치고 있는 개가담론 안에 내재된 모순을 살펴보고자 한다.

담론은 현실을 규율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부개가의 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합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은 담론분석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다.<sup>2)</sup> 담론이라는 것이 세계를 보는 관점과 태도의 근거가 되는 일련의 가치와 신념을 드러내는 글쓰기 또는 말하기를 의미한다고 볼 때, 신념과 가치란 세계를 보는 관점과 태도의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담론에 대한 연구는 그 담론이 담겨진 텍스트의 언어적 차원만이 아

- 1) 이 연구에서는 서구의 이질적인 외부세력에 의해 조선사회의 동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860년에서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는 1910년까지를 ‘개화기’로 보고자 한다.
- 2) 개화기에 타파되어야 할 대표적인 가족제도로 주목받았던 것이 조혼과 함께 축첩제와 과부개가금지였으며, 당대 지식인들은 ‘민지(民智)’의 계몽을 통해 이를 타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의도는 신문화와 신소설 등에서 ‘담론’으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개화기의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당시에 문제시되었던 일련의 가족제도를 둘러싼 담론을 살펴보는 한편, 그 담론을 형성했던 당시의 지식인들의 합의를 읽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자의 목적 아래 이미 축첩제를 분석하였고, 본고에서는 과부개가금지의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축첩제 담론분석의 연장선상에 있는 논문이다. 따라서 연구방법과 분석 텍스트를 비롯하여 근대성과 전통성이 혼거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시초의 공간으로서의 개화기, 그리고 그 개화기에 악습으로 지목되었던 가족제도에 대한 담론의 분석이 갖는 연구의의 등은 ‘개화기 축첩제 담론분석’(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권 2호)에서 논한 것과 일맥상통하므로 여기서는 그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니라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권영민, 1999:9-10). 따라서 개화기 담론은 개화기라는 시대 공간의 배경아래에서 읽어야 하는데, 담론분석은 바로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화기 지식인들의 계몽 담론이 형상화되는 대표적인 수단인 신문과 신소설의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개화기의 신문과 신소설은 ‘제봉’을 주요한 목적으로 발간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대 지식인들은 ‘민지(民智)’ 개발은 조선이 문명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적인 바탕으로 여겼기 때문에 신문과 신소설은 이러한 목적에 충실했던 것이다. 이에 본고는 당대의 신문과 을유문화사에서 발간한 『한국신소설전집』<sup>3)</sup>을 분석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 II. 개화기이전 과부개가금지의 연원

조선에서 과부의 재가를 금하는 습속의 결정적 계기는 ‘재가녀자손금고법’이다. 실학자 이익은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풍속에 중국도 따르지 못할 것’이 있는데, 미천한 여자로 절개를 지켜 개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국법이 개가한 자의 자손은 청선(淸選)의 길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조선의 미속(美俗)으로 수절을 들고 있었다(『성호한설』6집). 이처럼 재가녀자손금고법은 중국의 법에서도 그 연원을 찾아 볼 수 없는 조선만의 특유한 법제로서, 이는 이 법이 조선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도출해 낸 정치적 산물임을 명백히 대변해주고 있다.

재가녀자손금고법은 ‘재가부녀의 자손의 부과(赴科)를 금한다’는 항목으로 즉 재가부녀의 자손은 ‘문과, 생원진사과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한다. 조선전기 재가에 대한 규제는 시기적으로 볼 때 성

종 이전까지는 삼가녀에 대한 규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었고, 성종대와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재가녀의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재가녀자손금고법이 실천되기에 이른다. 즉 조선 초기의 재가금지는 고려말의 그것과 유사한데 이는 주로 삼취(三娶)에 대한 규제였고, 성종대에 와서는 부녀자의 재가금지가 강화되어 재가녀자손금고가 입법화되었다. 이처럼 조선전기에는 재가보다는 삼가(三嫁)가 문제였고, 재가 자체보다는 얼마나 빨리 재가하느냐를 문제삼고 있었다가 이후 금고법으로 법제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재가녀자손금고법은 적절적 성 통제의 핵심이며 정절은 조선시대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 세종 때까지 재가는 실행(失行)이 아니었으며, 여성의 재가를 실행으로 정의하는 일은 유교적 절의를 송상하는 명분론에 근거한다고 보기는 힘들며 재가를 실행으로 정의해 가는 과정은 곧 정치적 담론화의 과정을 의미한다(조은, 1997).

따라서 정치적 논점이었던 재가녀자손금고법은 그 반포되는 과정에서부터 이 법의 비현실성과 그 모순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합법화 된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논의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sup>4)</sup> 특히 연산군 3년에 있었던 논의는 이 법을 둘러싼 찬반의 대립을 잘 대표하고 있다.<sup>5)</sup>

한편, 재가녀자손금고법이 반포된 초기에는 철저히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중종 이후 경외사족(京外士族)의 부녀로서 재가한 자에 대한 조사, 재가녀의 가장들에 대한 치죄(治罪), 재가녀의 아버지에 대한 파직조치, 재가녀를 처로 삼은 자에 대한 징계 등으로 그 처벌이 강화되었다(이옥경, 1985). 후기로 갈수록 조선은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면서 중국보다 더욱 중국적이 되길 소망했으며, 이러한 열정은 정치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이 법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었다.

3) 이하 ‘전집’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4) 이 법이 입법화되는 과정 및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의 논의는 김용덕(1976), 박남훈(1991), 박용옥(1976), 이상백(1978) 참조  
 5) 재가녀자손금고법안에 반대하는 즉 부녀자의 재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살펴보면, 우선 이 법안은 사실에 합당하지 않고 시기에 맞지 않으며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부녀자의 원한을 증대시킨다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의 견해이다. 두 번째는 재가금지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인데, 재가는 전조(前朝)부터의 풍속이고 사족(士族)의 집에서 재가(再嫁) 또는 삼가(三嫁)하였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서는 풍속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이상주의적인 입장의 견해이다(박남훈, 1991).

금고법은 당시의 실상을 반영한 법제가 아니라 실상을 규율시키고자 하는 법제로서,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금고법이 반포된 즈음에도 과부의 재가는 혼란 일이었으며, 정절 이데올로기도 여성의 보편적 윤리 의식으로 내면화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재가녀자손금고법을 매개로 하여 여성의 정절은 더욱 미화시키고자 하였다. 조선조는 건국 초부터 열녀전을 수입하여 보급하였고, 정표(旌表), 복호(復戶), 면천(免賤)을 통한 국가적 보상책으로 말미암아 열녀는 양반에게는 영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수단이 되고 양인에게는 과중한 요역의 부담에서 놓여나게 되며, 천민에게는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의 의미가 되었기에 열녀는 한 여자의 회생 위에 일족이 살아가는 한 방편이 되었다(이옥경, 1985).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정절 이데올로기를 민풍화(民風花)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포상을 받기 위한 열녀의 행위를 점차 극단적으로 치닫게 하는 배경이 되어 개화기에도 예외 없이 극렬한 방법으로 열행(烈行)을 실천하는 과부를 신문과 소설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sup>6)</sup>

### III. 개화기 과부개가금지 담론의 실상과 특성

#### 1. 과부개가금지를 둘러싼 개화기의 일상

1894년 갑오경장의 14대 개혁안에는 ‘혼자된 여성은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재가하도록 해야 한다(寡女再嫁無論貴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혁안에서도 천명되었듯이 ‘과부의 개가금지’는 당대 주목받던 악습의 하나였다. 개가금지를 이렇게 조망하게 되는 주요한 배경에는 그 이전에도 논의되었듯이 과부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에 있었고, ‘인권’에 대한 당대의 주목은 이러한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다. 지식인들은 과부들의 경제적 열악함과 남편의 부재로 인한 독수공방의 ‘참혹한’ 삶에 주목하여

개가허용의 당위성을 논하고 있었다. 특히 13·4세 부터 과거(寡居)하는 청상은 그 적막한 공방에 자나깨나 슬픔이고, 새 짐승이 쌩쌩이 노는 것만 보아도 한탄이며, 백화가 만발한 봄날 ‘천지간 만물이 모두 즐기어 있을 때’조차도 ‘홀로 수심’에 차 있다(제국신문, 1907.10.10.)고 하면서 담론은 청상의 불행한 삶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회계원경 민치현 역시 과부개가허용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을 때(제국신문, 1900.12.1;12.4.), 과부들의 ‘외로운 정상과 밤 베개의 탄식소리는 보는 자의 창자를 찢어지게 하며 듣는 자의 골을 서늘’(제국신문, 1900.12.5.)하게 한다고 하면서 개가허용의 당위성을 이들의 삶의 모습에서 찾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개화기의 담론은 무엇보다도 과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정경’에 주목하고 있었고, 이러한 주장에는 특히 청춘여성에게 ‘과거(寡居)’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 과부개가금지의 습속은 갖가지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과부들의 참혹한 경제적 상황과 함께 일상에서 묵인되고 있던 ‘과부 업어가기’ 이른바 과부보쌈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개화기 과거하는 여성의 삶의 모습은 이들의 신분과 경제력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당시의 봉괴된 신분제로 인하여 그 다름의 보다 근본적인 결정요인은 경제력이라 할 수 있다. 매일의 끼니가 염려스러운 여염집 여성에게 과부의 수절은 사치스러운 것일 수 있다. 삶의 수단을 공고히 하지 못한 가난한 집 과부에게 있어 개가는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제였으며, 여성이 가장이 되어 자신의 삶을 연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당시의 사회 문화적 조건으로 미루어 볼 때 경제력이 없는 과부의 개가는 그야말로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부들의 삶의 구체책으로 민가에서는 ‘과부보쌈’을 묵인하였고, 이와는 의미가 다르다 할지라도 사대부가에서도 드

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전미경의 ‘개화기 가족윤리의식의 변화와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41-151 참조.

물지만 친정 아버지나 친정 오빠의 묵인 아래 과거 하는 딸이나 누이의 보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만연된 과부보쌈, 즉 동네에 과부가 있다 하면 ‘아주 주인 없는 물건’으로 알아서 이웃집 무뢰배들이 ‘꽁길하여 빼앗아 오는’(제국신문, 1907.6.21) 풍속은 간파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과부보쌈에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였기에 보쌈 당한 많은 수절과부는 자신의 실행함을 수치스럽게 여겨 자결을 하는 등 이로 말미암은 사건과 이에 대한 논의가 신문에 자주 보도되었다(예를 들면, 황성신문, 1907.6.21; 대한매일신보, 1907.7.4; 1910.6.26.). 그리고 이러한 사회문제는 다시 한번 과부개가를 허용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또한 ‘개가 법은 튼다튼다 하면서 왜 아니 트노. 제 속으로 난 자식을 제가 못 기르고 다리구멍에 내버리니 사람이 차마 할 노릇인가(황성신문, 1907.8.23.)’라는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부의 개가금지로 말미암아 자식을 유기하는 일도 빈번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가 말해주듯이 갑오경장의 개혁안에 과부 개가가 수용되었다 할지라도 ‘개가 소통’이 쉽게 토착화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여성의 정절윤리가 조선 중앙정부의 꾸준하고 강력한 강제책과 유인책 그리고 사회화 과정을 통해 그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었던 것처럼(이옥경, 1985), 한 번의 과부개가를 허락하는 법 제정으로 그 개가법이 실생활에서 잘 실천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담론은 먼저 과부개가의 실천을 ‘사대부’의 계층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즉 과부의 수절을 가문의 ‘영예’로 여겼던 사대부가에서 이제 ‘개가’는 ‘개화’와 ‘문명’함의 상징으로 조망되었다. 그리하여 개화기 말미로 접어들면서 문명함의 지표로 과부의 개가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례가 신문을 통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sup>7)</sup>

## 2. 지식인들의 과부개가허용의 ‘담론’ 만들기

### 1) ‘제동의 이분법’ 아래에서 단죄되는 과부개가 금지

개화기는 ‘서구’라는 외부가 일상에 직접적으로 접목되는 시기이다. 서구는 조선을 ‘세계’의 일국(一國)으로 편입시킴과 동시에 조선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자주독립국으로 존속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었다. 특히 개화파 지식인들을 포함하여 새로운 타자 ‘서구’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은 일상에서 익숙했던 조선의 문물을 매우 낯설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이들이 갖게 된 새로운 서구적 인식은 조선의 제도와 윤리를 재단하는 잣대로 기능하면서 ‘개량’의 지표가 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일본을 포함하여 서구 열강은 조선과 비교될 수 있는 새로운 준거가 되었다. 봇물처럼 밀려들어오는 열강에 대한 인식은 곧 ‘위기의식’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조선이 살길은 열강 보다 더욱 강한 열강, 즉 ‘문명국’이 되는 것이었다. 지식인들은 인민의 ‘제동’은 조선이 처한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탕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의 구도는 서구와 조선이라는 이분법적인 구획 안에서 일상의 모든 것을 조망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이분법적인 계동의 칼날아래에서 서구의 것과 조선의 것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두 동강 나고 있었다. 서구/조선, 기독교/이교(미신), 문명/야만, 새 것/낡은 것, 개화/수구, 부강/나약, 선/악, 깨끗함/더러움, 건강/질병 … 이 냉철한 이분법적 충위 아래에서 과부개가금지는 대표적인 야만적 악습이 되어 ‘계동’의 처분을 기다리게 되었다.

7) 주목할 만한 사대부가 과부의 개가사례로, 제도국 총재 김윤식은 과거하는 외손녀와 상배(喪配)한 시종(侍從) 이교영 씨와의 혼례를 자청하여 성례하였으며(대한매일신보, 1908.7.8.), 대한신문사의 총무신은 상처한 이후 25세 된 과부와 결혼하였고(대한매일신보, 1908.12.19), 전판서 남정철의 과거하는 15세 절녀가 곧 성혼할 예정에 있으며(대한민보, 1910.3.15), 이밖에도 통감부 기수인 홀아비가 과부를 광구(廣求)하였으나 사기 당한 사건(대한매일신보, 1910.6.7.), 그리고 전 판서 서상우씨의 과거하는 23세의 딸이 학부 위원 어재승씨와 결혼하기로 정하였다 소식(대한매일신보, 1908.9.16) 등이 있다.

조선 풍속 같으면 청상 과부가 시집가지 아니 하는 것을 가장 잘난 일로 알고 일평생을 근심 중으로 지내나, 그러한 도덕상의 죄가 되는 악한 풍속은 문명한 나라에는 없는 고로, 젊어서 과부가 되면 시집가는 것은 천하만국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정상 부인이 어진 남편을 얻어 시집을 간다. ('혈의누', 전집 1권, p.35.)

일본과 같은 문명한 나라에서 개가는 '천하만국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논리를 앞세우면서 일본인 정상부인은 '어진 남편을 얻어' 시집가고 있었다. 이처럼 지식인들은 문명국에서는 과부개가허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조선 땅에서 과부개가금지와 같은 미개한 악습이 어떻게 보편적인 일상으로 귀착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我朝法典에도 元來 婦人の 改嫁를 禁制함이 아니라 特其改嫁女子孫은 不許清宦이라 흄으로 由하야 士大夫家로부터 一大防範을 삼아 一般平民신지 風習을 駐成하야 遂히 改嫁一事로서 家門의 莫大羞 羞耻와 非常한 變怪로 認知하니라. (황성신문, 1908.7.11.)

이와 같이 지식인들은 무엇보다 '개가자손의 청환을 금한다'는 재가녀자손금고법으로 인하여 개가금지가 일반의 혼속(婚俗)으로 귀착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담론은 '개가자손은 불허청환(不許清宦)이란 구법(勾法)이 있은 후로 인가에 청상이 출하면 일가의 화기가 멸망함은 생각지 아니하고 청환의 전정(前程)이 폐절(廢絕)할가 망려(妄麗)하'(황성신문, 1899.5.12.)게 되었다고 하면서 개가금지의 연원을 '재가녀자손금고법'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신소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탄금대」에서는 재가녀자손금고법을 '황희 황정승의 일시 실언'으로 인한 변괴로 설명하고 있었다(「탄금대」, 전집 5권, p.236.). 이처럼 재가녀자손금고법은 과부개가를 금하는 강력한 기제였음에 분명하였고,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적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식인은 과부개가금지가 조선에 유래된

그 시발점을 '중국'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본티 녀자의 기가함을 법률로 빼 금훈 것스되 기가훈 사룸의 주손은 청환을 식히지 안는 고로 수대부가 이것을 봇그려워하야 헝후지 안으며 죠한 지나의 벳사룸의 렬녀는 불경이부라 흄는 말을 잘못 해석하야 남주는 두번 세번 장가를 들어도 녀주는 불헝후야 한 번 과거하면 두 번 식집가지 못하게 헉엿눈되 여러 빅년 사이에 주연히 풍속이 되어 하날이 명한 법으로 알고 감히 헝치 못한눈도다. (제국신문, 1907.10.10.)

즉 개가금지의 풍속은 원래 조선의 고유의 풍속이 아니라 중국의 풍속이라는 것이다. 개화기에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인 '중(中)'이 아니라 변방의 하나인 '지나(支那)'로 하등 되었는데, 이러한 명칭에서도 짐작되듯이 조선 내에서 '중국'은 거부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우승열폐'의 논리 아래에서 청은 열등한 국가가 되었고, 청일전쟁에서 청의 패배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청의 추락은 다음의 구절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진흙투성이의 서소문 안 길의 지저분함을 설명하면서, '청국 서울 북경서 이런 길을 한 번 보고 또 한번은 꿈속에 지옥에 들어가서 본즉 지옥에 가는 길이 이 길과 같으나 지옥 길에서는 냄새는 이렇게 나지 않더라'(독립신문, 1897.2.2.)고 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개화기에 청의 수도 북경은 지옥과 등가화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망되고 있었다. 이처럼 붕괴된 중국의 위상은 곧 조선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중국의 물락이 유교적 윤리의식의 당위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과거 조선은 중국의 속국임을 자처하면서 중국보다 더 '중국적'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개화기에 접어들어 쇠약한 중국은 유교의 가족제도 및 가족윤리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었다.

2) '국민' 생산의 걸림돌이 되는 과부개가금지  
 개화기 제국주의적 열강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경이'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조선인들은 두려움의 감정을 수습하면서 열강을 '찬찬히' 탐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엇'이 지금의 열강을 있게 하였는가. 열강이 내재하고 있는 '그 무엇'이 조선에는 부재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특히 개화파 지식인들은 그 해답의 하나를 '건강한 인종'에서 찾고 있었다. 계몽담론은 '인구는 곧 국력'이라는 등식아래 국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건강한 인구의 증가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개화기 대표적인 악습의 하나였던 조혼 역시 그 폐지의 당위성 중 하나를 조혼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인종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었고(황성신문, 1909.9.3;9.4), 축첩제 또한 문명한 국가건설의 걸림돌로 조망 받으면서 그 타파의 타당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과부개가금지 또한 같은 논리로 설명하고 있었다.

개화기의 '국가'는 조선의 모든 것을 그 하위에 들 수 있는 최고 정점의 위치에 있는 대상이었다. 국가를 위하는 것 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기에 '국가에 유익한 일이면 비록 몸이 죽고 집이 망할지라도'(대한매일신보, 1908.3.10)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개화기에, 개인과 가족이 '구국'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당위적인 것이었다. '풍전등화'와 같은 조선의 위기감은 '국가' 이외의 그 무엇을 수용할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조선의 자주독립과 문명개화 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개인 역시 '이천만 중 일분자'인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명명되면서 '국가'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했다.

한편, 조선의 일상에 모습을 드러낸 커다란 몸집의 서양인은 조선인을 압도하기에 충분하였다. '백인종은 오늘날 세계 인종 중에서 제일 영민하고 부지런하고 담대한' 인종(독립신문, 1897.6.24.)이라는 담론에서 굳이 강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거대함과 경이로운 물물은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고 있었다. 이제 조선이 열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강건한 '몸'을 만들고 육성하는 것은 필수불가

결한 일이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의 구성물인 '국민'의 강건함을 방해하는 제도는 척결의 대상이 되었고, 과부개가금지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비난받고 있었다. 즉 국민생산의 기능을 보유한 젊은 여성에게 수절을 강요케 하는 과부개가금지의 제도는 '인종(人種)'을 절감하게 하는 제도로 논의되었다.

그러므로 청상(靑嬌)을 '규중(閨中)에다 쳐박아 두어 한숨·눈물로 누에 늙히듯 일생을 허도하게 잡도리'(「홍도화」, 전집 6권, p.311.)하게 한다는 구절에서도 짐작되듯이 이러한 과부의 삶은 개혁 인사에게 낭비되는 인생으로 여겨졌다. 다시 말해 청상의 수절로 인한 '인종의 모손(耗損)'은 실로 참혹하고 경악할 일이라는 주장(황성신문, 1908.7.11.)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가금지의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력을 쇠약 시키는 기제로 조망되고 있었다. 이러한 일면은 신소설 「홍도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같은 과부가 수절이니 정절이니 하고 세상에 났던 보람없이 아무 재미 모르고 그대로 시들어 죽던지 자결을 하여 죽던지 그런 얼뜨고 어림없는 일이 어찌 있어? 개가를 해서라도 악한 행실만 아니하고 유지한 남편의 배필이 되어, 적게 가정윤리를 바르게 하고, 크게 사회 습관을 개량하면 비단 내 한 몸의 철천지한(徹天之恨)을 풀어볼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몇만 명 내 신세와 같은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 일체로 원통한 세월을 면하고, 화락한 천지를 만나게 되면 그 영원무궁한 사업이 어찌 구구한 작은 생각으로 천금 같은 생명을 버려 물거품 저지듯 났던 혼적도 없어진 것에다가 비할 수 있나!**(「홍도화」, 전집 6권, p.389.)

「홍도화」의 태희에게 정절을 지키면서 삶을 마감하거나, 혹은 수절을 위해 자결하는 것은 '얼뜨고 어림없는 일'일 뿐 아니라, 이러한 삶은 무엇보다도 '세상에 냈던 보람'을 찾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과거(寡居)의 삶을 접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즉 그녀가 과거하는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는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세상

에 태어난 ‘보람’을 찾고자 함에 있었다. 그리고 그 보람있는 일은, ‘유지(有志)한 남편의 배필이 되어, 적게는 가정윤리를 바르게 하고, 크게는 사회습관을 개량’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녀 개인의 한을 푸는 일일 뿐 아니라, 조선내 몇만 명의 과부들에게 바람직한 본보기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원통한 삶’을 구제하는, 그리하여 조선의 ‘화락한 천지’를 건설하는 ‘영원무궁한 사업’이었던 것이다. 즉 과부 태희에게 개가는 국가를 위하는 일종의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과부개가의 허용은 결코 과부 개인의 충위에서 논해지는 것이 아니었으며, 사회와 국가의 충위에서 조망되고 있었다. 「홍도화」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과부가 된 딸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태희 아버지에게 개화인사 김참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김참) “자식을 내가 낳았다 뿐이지 남녀를 물론하고 막중한 국민의 한 분자된 이상에 어찌 죽기를 바라며, 또 지금 이같이 개명(開明)하여 오는 이십세기에 그저 정신을 못 차리고 양반이나 상것이니, 잠꼬대를 한단 말인가? … 사정으로 말하면 나의 금옥같이 귀한 자식에 못 할 노릇을 하여 움을 자르고 소금을 치러들며, 또 공익(公益)으로 말하면 청상과부(青蠟寡婦)를 억지로 수절케하여 국가생산에 큰 손해가 되게 한단 말인가? … ”(「홍도화」, 전집 6권, p.294.)

김참서는 무엇보다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소유물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자식은 부모의 자식이기 이전에 ‘막중한 국민의 한 분자’이기에, 조선 국민의 한 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가금지는 ‘국가생산에 큰 손해’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청상에게 수절을 강요하는 것은 건강한 젊은 여성에게 조선의 미래를 짚어질 자녀를 놓고 기르는 ‘국가생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큰 손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화인사들에게 과부개가금지의 혼속은

악습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적 이익을 방해하는 미개한 풍속으로 몰아가고 있었으며, 이러한 논리는 과부개가금지가 타파되어야 하는 당위적 근거로 제시되었다.

### 3. 과부개가금지 담론의 새로운 시각

#### 1) 개가여부의 결정권자로서의 과부

개화기 ‘과부의 개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남녀평등의 잣대가 적용되고 있었다. 즉 ‘아내 죽으면 후위하는 것은 저희들의 옳은 법으로 작정하였고 서방이 죽으면 개가하여 가는 것은 천히 여기니 그것은 무슨 의련지 모르겠다’(독립신문, 1896.4.21.) 고 하는 개탄의 목소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담론은 남녀별 이중잣대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였다(황성신문, 1899.5.12; 「홍도화」, 전집 6권, pp. 308-309.). 이처럼 개화기 무르익은 ‘과부개가허용’의 주요한 타당성은 ‘남녀동등’의 윤리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남성과 동등한 유기체로서 여성의 권리가 서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면의 한 부분을 개가여부의 결정권을 과부 본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담론은 과부의 개가는 관습적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가여부는 전적으로 과부 본인의 의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과부들로 말하여도 본인 헝실이 탁월한 송죽고치 구든 결기와 금석고치 단단한 마음으로 평성을 맛쓰고져 흥은 이는 그 뜻을 가지 씨앗지 못하려니와 … (제국신문, 1899.10.14.)

(과부) 당조로 말하여도 헝세 보노라고 평성을 설계 지닐 셋다이 업스니 헝세에 구이치 말고 편성티로 기가를 흔든지 슈결을 흔든지 님의디로 흔시오. (대한일보, 1904.7.10)

담론은 ‘수절’하는 과부에게 억지로 ‘개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반대로 억지 ‘수절’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부모가 권하고 이웃 사람

이 가유하여도 종시 맹세하고 개가하지 않는 자는 구태여 그 뜻을 빼앗지 말'(제국신문, 1900.12.5)라는 당부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과부개가허용'의 법제화에 힘입어 수절하고자 하는 과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친정부모나 형제들의 강권에 의하여 개가나 보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이를 실행으로 여겨 자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따라서 당시 지식인들은 과부의 개가의지 만큼이나 수절의지 역시 부모나 사회가 함부로 좌우할 수는 없으며, 과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대여 남녀가 작비っぽ은 인도의 비롯っぽ이니 가히 억지로 구하며 강박히 헝치 못할 것이오 호익 비와 과부가 서로 작비っぽ은 쪽의 마암티로 할 것이다. (제국신문, 1907.6.21.)

이상의 담론은 당시 만연했던 과부 보쌈이 전국에 걸쳐 금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남녀의 작배(作配)는 '인도(人道)'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구하거나 강박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하면서 홀아비와 과부의 작배는 당사자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억지로 수절을 강요해서도 안되며, 또한 수절하는 과부를 억지로 개가 시켜서는 안 된다는 담론은 비록 후자에 초점이 맞추어 강조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주장은 과부의 개가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과부인 여성에게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의 매우 중요한 항로 결정에는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함을 역설(力說)하고 있었다.

8)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가를 강요 당한 사대부가의 과부가 수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과혼을 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즉 전 판서 서상우씨의 과거하는 23세의 딸은 학부위원 어재승과 결혼하기로 정해졌다는 소식(대한매일신보, 1908.9.16.)은 사대부가에서는 선구자적인 개가 사례로 사회의 주목을 받았으나, 15세에 상부한 과부 딸의 '貞固一心이 其節을 不變' 했기에 과혼되었으며, 이에 신문은 그 신부의 수절의지를 '誰 | 能히 통혼하며 誰 | 能히 契志하리오'라고 평하고 있었다(황성신문, 1908.9.27.).

## 2) 과부개가의 형식으로 강조되는 '의례'

담론은 과부개가에서의 통과의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즉 과부가 개가를 통해 부부됨을 맺을 때 의례를 갖춘 개가이어야 정식의 부부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본인의 개가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禮)없이 이루어진 사실혼만으로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진정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가족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과부의 수절이 여전히 아름다운 부덕(婦德)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부의 개가는 가족갈등을 초래하였기에 이러한 갈등을 외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고안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과부의 개가라 할지라도 흄 없는 '부부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례'를 갖추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개가에 있어 부부됨을 선포하는 '형식'에 대한 요구는 민치현의 상소문에서도 주장되고 있었다.

설혹 기가호는 자가 잇더루도 남의 침방고 수  
지즘을 두려호 야 감이 혜법으로 친영호는 일이  
업셔서 유장찬혈호는 것을 면치 못하니 엊지  
혜법에 어괴미 아니릿가. 신의 어리썩으믄써  
호건티 지금붓터 사룸의 집에 소년과부가 잇는  
자 |면 반드시 릭일하고 폐백을 드리고 혼갈갓  
지 혼인혜법을 차리되 십 오 세로붓터 이십 셋  
그지는 초취로 흐고 삼십 세로 수십세쓰지논  
직취 삼취로 흐고 거괴 지는 자는 실시흔 것으로 치지하고 … (제국신문, 1900.12.5.)

이와 같이 사대부와 선각자들은 과부를 개가시킬 때 반드시 초혼과 마찬가지로 '육례'를 갖추어야 할 것이 강조되었다. 담론은 남녀가 그 자신의 의지로 부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은 사생자임에 틀림없으며, 사회

의 윤리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사생자에게는 천한 대접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인륜의 명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제국신문, 1907.10.10.). 뒤에서 논하겠지만, 과부의 개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담론에서 수절과 정절의 윤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화기에 급격히 붕괴하는 성윤리에 비례해서 정절의 윤리는 더욱 강조되고 있었다. 과부개가를 둘러싼 담론은 무엇보다도 과부의 개가가 성적 욕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의 사사로운 합으로서의 ‘음란한 행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새로운 부부의 탄생을 의미하는 개가와 음란한 행실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통과의례란 형식이 필요했던 것이다.

#### IV. 개화기 과부개가 담론의 이중성: 더욱 고매해진 정절윤리

개화기 과부의 개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계몽적 담론은 여성에게 정절의 윤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에서는 여성의 정절윤리를 부당한 윤리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윤리를 적극 수용하고 더 나아가 더욱 고매한 윤리로 규정짓고 있었다. 이제 과부개가 담론 속에 자리잡힌 이러한 이중적인 일면을 살펴보자 한다.

‘가난한 여편네가 소년에 과부가 되면 개가하여도 무방하다’(독립신문, 1896.4.21.)는 주장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당대의 담론은 개가를 허락해야 하는 과부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었다. 즉 양가(兩家)의 택 일단자만 받은 상태에서 과부가 된 경우이거나 혹은 성례(成禮)는 하였으나 합례(合禮)도 못한 상태에서 신랑이 죽은 경우, 그 과부에게 수절을 강요하는 것은 ‘과격한’ 일이며, 스물 안팎의 과부이거나 자식이

9) 개화기에 피폐한 경제적 상황은 일상에서 정절을 더욱 강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당시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자식 특히 딸을 매매하는 경우가 허다하였고, 여아의 나이에 따른 지참금이 공공연하게 목인될 정도로 매매혼이 만연되었으며, 특히 급증된 매음녀들은 사회의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다. 이러한 일면은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서울에서만 대략 ‘이천 오백명’의 매음녀가 있었다는 기사(대한매일신보, 1909.4.3.)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식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 성윤리의 붕괴로 여겨졌으며 이것은 또 다른 위기의식으로

없는 서른 전후의 과부는 수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대한일보, 1904.7.10.). 이러한 담론에서 조선 안에 있는 모든 과부에게 개가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식을 두고 개가할 경우 여전히 타인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제국신문, 1907.10.6.), 다만 무자(無子)한 ‘소년상부(少年喪夫)’의 개가만이 타인의 따가운 눈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부개가허용 담론이 ‘유교적 부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절의 윤리를 적극 수용하여 정절을 고결한 윤리로 더욱 격상시키고 있음을 다음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大抵 婦人이 不幸히 其所天을 袋<sup>한</sup>면 貞節을  
守<sup>한</sup>야 之死靡他<sup>한</sup>은 淑德烈行의 卓異<sup>한</sup>者라.  
故로 朝家에서 旌表의 典을 施<sup>한</sup>함이 有<sup>한</sup>나 此  
는 特其貞烈의 性이 出天<sup>한</sup> 婦人이 能<sup>한</sup> 할 바이  
오 普通婦人의<sup>한</sup> 貞<sup>한</sup> 바 아니라 若我韓의 俗  
과 如<sup>한</sup>홀진터 一般婦人界의 不改適<sup>한</sup>함이 爲其通  
常<sup>한</sup>니 엇지 貞烈의 名稱이 特有<sup>한</sup>리오. (황성  
신문, 1908.7.11)

과부의 개가를 허용해야만 되는 근거로 지식인들은 여성이 겸비해야 하는 윤리덕목 중 가장 정절에 위치하는 정절윤리는 ‘정행(貞行)’이 뛰어난 일부 여성들의 실천윤리이자 보통의 여성에게 강요할 것이 못된다고 하면서 과부의 개가를 허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처럼 개화기 정절윤리가 매우 중요한 윤리강령이었다는 것은 ‘과부’를 개가시켜야만 하는 이유로 실절(失節)은 가문의 욕이 되므로 차라리 개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담론(제국신문, 1899.10.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9)</sup>

어쨌든 개화기에 주목할 만한 변화로서 ‘정절은 모

든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매우 고매한 윤리강령'이라는 주장을 지적할 수 있다. 개화기에 '재가녀자손금고법'은 그 실효성을 펼 기반을 잊게 되었으며, 약화된 중앙정부는 강력한 '정표정책'을 실천할 수 없었기에 이러한 모든 요인은 정절윤리를 훼드는 기제가 되었다. 또한 일상에서는 과부개가를 금하는 관습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여러 사회문제의 도출과 함께 과부의 개가사례가 실제로 늘어났고, 이러한 실상은 과부개가를 허용해야만 하는 시대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절윤리를 고수하면서 과부의 개가도 허용해야 하기 위해 고안된 대안이 바로 정절윤리를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매우 고매한 윤리강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개화기 과부개가의 담론에서 정절윤리가 우리사회에서 서서히 '의무초과'적 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는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의무초과'라는 개념의 뜻은 '의무(duty)'라는 개념과의 비교를 통하여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의무'라는 것은 싫든 좋든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위를 말하지만 '의무초과'라는 것은 그것이 찬양 받을 만한 훌륭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당위성은 없는 행위를 말한다 (김태길, 1990:60). 열관념 즉 정절윤리는 삼국시대 이래로 본받아야 하는 고매한 여성윤리로 강조되어 수많은 미덕을 만들어 냈으며 조선의 중앙정부의 출기찬 노력에 힘입어 신분과 관계없이 일상에서 기능하는 당위의 규범으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개화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는 정절윤리를 모든 아내에게 강요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상실하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정절의 윤리는 일부 고매한 품격을 지닌 여성의 윤리로 강조되면서 '의무초과'적 개념으로 정립되고 있었다.

## V. 맷음말

한국사에서 근대로의 전환의 시발점으로 일컬어지는 개화기의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지식인을 포함하

여 일반의 민인(民人)에 이르기까지 그 보폭의 정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일상을 접하는 사유와 행동방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이 오늘날 이 시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변화는 그 이후 한국사의 술한 전환점, 예를 들면 일제시대, 해방, 한국전쟁 등에 의한 변화의 파장보다 더욱 강력하게 우리들의 일상에 깊이 각인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의 가족생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가족학에서 개화기의 일상을 찬찬히 읽어보는 작업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족을 둘러싼 일상의 '계보학적 탐색'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개화기에 계몽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주체자인 지식인들은 무엇보다도 '국가'를 염두에 두고 과부개가금지를 조망하고 있었다. 물론 당시의 지식인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과부들의 괴폐한 경제적 상황과,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독수공방'의 삶을 강요케 하는 부당한 윤리의식에 주목하여 그것의 그릇됨을 강조하였다 할지라도 과부개가금지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논리의 근거는 이들 과부 개인의 삶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층위에서 설명되고 있었다. 즉 조선의 문명개화는 민인들의 '계몽'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여겼던 당대의 지식인들은 계몽의 이분법적인 논리로 과부개가금지의 풍속을 악풍으로 매도하였고, 이러한 주장의 당위성은 '국가'라는 틀 안에서 더욱 공고히 하였다. 과부개가금지는 국민의 생산력을 보유한 청상에게 수질을 강요케 하여 그 국민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조망되면서 이 제도는 조선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비춰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의 담론은 개가의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바로 과부 자신에게 주어야 할 것과 함께 당시 정절의 윤리강령이 일상에서 확고하게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부의 개가로 인한 가족갈등을 막기 위하여 재가라 할지라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위기의식이 수구인들은 물론이고 계몽의 선각자들에게까지 '정절'을 주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도 '친영'과 같은 육례를 갖출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과부개가 담론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담론이 정절의 윤리를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수절을 지키는 것은 보통의 여인이 감내할 수 없는 규범이라고 하면서 정절윤리를 더욱 고매한 윤리로 강조하였고, 이러한 이들의 주장 속에서 현재 '의무초과'의 규범으로 자리잡은 정절윤리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절윤리가 여전히 일상에서 기능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면은 성폭력 및 성희롱의 피해자 여성에게 내리 끗히는 질타의 시각을 비롯하여 특히 분단이래 처음으로 갖게 된 남과 북의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단지 수절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북에서 내려온 남편을 만나길 꺼려하는 여성들의 모습에서 단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재가를 비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재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자신과 혹은 자식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되어진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아내는 '수절'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남편에 의해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개가한 아내는 남편의 눈길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죄인이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개화기의 일상을 접하게 된다면 '여성을 억압하는 성적 규범이라는 것이 근대 이후에 훨씬 더 견고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고미숙, 2000:130) 의구심이 발현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의 정절규범에 대한 집착은 신문화와 신소설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가족과 여성들 둘러싼 일상에서 이러한 강요로 인한 파편의 혼적을 찾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개화기 과부개가금지를 둘러싼 담론 안에는 당대 사회의 변혁을 이끌던 지식인들과 지식인의 목소리에 경청할 것이 강요되었던 '인민'들과의 관계가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지식인이 당시의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시키고자 하는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힘을 동반하고 있는 이들의 계몽의지는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개화기 문제로 지목 받았던 가족제도는 특히 '여성'을 억압하는 굴레로 기능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당시의 개화파 인사들도 공감했지만, 이들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굴레의 제거를 주장하였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예를 들면, 성윤리, 모성과 모성이데올로기, 이혼녀들에 대한 질타와 냉담, '결혼식'을 통해 부끄럽지 않은 부부로 완성되고자 하는 사실혼(事實婚) 상태의 부부들, 여전히 미덕으로 자리잡고 있는 과부의 수절, 등 지금의 가족을 둘러싼 미시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이 연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일상에 묻어있는 개화기의 단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은 지금의 가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 【참 고 문 헌】

### - 1차자료 -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성호한설』6집(민족문화추진회, 1977)

제국신문.

황성신문.

『한국신소설전집』(을유문화사, 1968)

### - 2차자료 -

고미숙(2000). *비평기계*. 소명출판.

권영민(1999).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학 교 출판부.

김용덕(1976). *부녀수절고*.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이조여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김태길(1990). *변혁시대의 사회철학*. 철학과 현실사.

박남훈(1991). *조선전기 재가금지법과 실제*. 최재석 교수회갑기념논문집. *한국의 사회와 문화*. 일지사.

박용옥(1976). *이조여성사*. 한국일보사.

이옥경(1985). *조선시대 정절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

- 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이상백(1978). 재가금지습속의 유래에 대한 연구. 이  
상백저작집 1권. 을유문화사.
- 전미경(1999). 개화기 가족윤리의식의 변화와 가족갈  
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미경(2001). 개화기 축첩제 담론분석. 한국가정관  
리학회지 19(2).
- 조 은(1997). 모성·성·신분제; 『조선왕조실록』‘재  
가금지’ 담론의 재조명. 한국사회사학회, 사회  
와 역사 51집.